

| | | |
|---------|-----------------------|--|
| 사 용 물 | 위 치 | |
| | 면 적 | |
| | 사용 방법 | |
| 사 용 기 간 | 199 . . . - 199 . . . | |
| 사 유 | | |
| 기 타 | |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양 주 군 수

【 10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 출 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동일자치단체내의 국,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건물대부로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94. 1. 1 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하여 공유림의 보존, 확대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기하기 위함.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 정비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요율 체계를 정비함.

주요골자

○ 마을회관등의 무상위탁관리의 확대 (조례제5조)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함 (조례제23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조례제25조)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 (조례제26조)

○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93. 12. 31부로 폐지함 (조례제34조 - 36조삭제)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조례제39조의 2)

- 일단의 토지매각면적 제한완화 및 건물집단화 매각규정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 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중

나목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제26조 제1항중 단서 및 동항 제2호중 “30”을 각각 “60”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text{m}^2$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text{m}^2$ 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동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1)군수는 공 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u>마을회관 또는 노인회</u> <u>관의 운영</u>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 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 ----- ----- <u>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u> <u>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u> <u>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u> <u>이용시설의 운영</u> ----- ----- ----- ----- |
| (2) (생 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 부 등의 대상이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 (2) 현행과 같음. 제22조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같다.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 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 -----제2항 ----- ----- ----- ----- -----. |
|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
| ① - ④ (생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u> <u>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u> <u>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u> <u>1,000분의 10으로 한다.</u> | ⑤ <u>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하기하는</u> <u>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u> <u>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u> <u>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u> |
|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25조 -----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
| (신설) |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 - 제36조) | (삭제) |
| 제39조의2 (생략) | 제39조의2(현행과 같음)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신설) | <p><u>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u></p> <p><u>시지역에서는 1,000m²이하 기타지역에서</u></p> <p><u>는 2,000m² 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u></p> <p><u>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u></p> <p><u>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p> <p><u>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u></p> <p><u>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다</u></p> <p><u>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다 면적의 2</u></p> <p><u>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u></p> <p><u>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u></p> <p><u>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u></p> <p><u>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u></p> <p><u>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u></p> <p><u>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u></p> <p><u>이 동 호의 1,000m² 또는 2,000m² 를 초</u></p> <p><u>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u></p> <p><u>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u></p> |